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최정순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655호

다. 발의일자 : 2019. 5. 22

라. 회부일자 : 2019. 5. 24

### 2. 제 안 사 유

-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 누수량 경감 사유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누수로 한정함(안 제26조제3항)

##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수도법」

나. 예산 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해당없음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수자원 낭비 예방 및 수도사용자의 관리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기존의 모든 경우에서 지하 및 벽체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누수 감면 규정

- 현행 수도 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 정산은 다음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 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방법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검침량 - 정상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량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 감면 신청) 제1항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수도사업소장은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면 적용대상, 감면 금액 및 감면 처리 절차 등은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2009.9.25.)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 감면 적용대상: 모든 업종(가정용('96~), 모든업종('09~))
- 감면 금액: 상수도, 물이용부담금은 누수량의 1/2 경감. 하수도는 누수량 전체 감액
- 적용 대상 확대 배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sup>1)</sup>(06.10.26)
- 감면 처리 절차: 신청 → 담당자 문서 확인 → 현장조사 → 적용여부 결정 및 조치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옥내 누수 발생 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 실정임 .
- 반면에 타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는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부산광역시<sup>2)</sup>를 포함한 5개 광역시<sup>3)</sup>는 지하 및 벽체 누수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누수감액 대상 위치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대 전	울 산	광 주
누수 위치	조건 없음	지하·벽체					급수관 파열·동파

1) 수요가의 급수 설비 관리책임, 업종 구분, 감면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함

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의무·책임) 제4항에서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 시설이나 그 밖의 수용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제1항 제3호에서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3)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및 울산광역시

## 2) 서울시 누수 감면 현황

### □ 누수 원인별 누수 건수, 누수량 및 감면 금액

- 2018년의 누수 건수는 69,542건, 누수량은 4,650천m<sup>3</sup>, 감면금액은 39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
- 누수원인(위치)별 감면 건수는 배관 노후가 42,060건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고, 변기가 전년대비 2,800여건 증가한 22,974건으로 33.0%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누수원인별 감면 건수, 감면량 및 감면 금액

구 분	2017년	2018년
처리 건수 (건)	47,252	69,542
배관 노후	25,456(53.9%)	42,060(60.5%)
<b>변기</b>	<b>20,108(42.6%)</b>	<b>22,974(33.0%)</b>
배관 동파	569(1.2%)	3,319(4.8%)
저수조·물탱크	392(0.8%)	499(0.7%)
기타	727(1.5%)	690(1.0%)
감 면 량 (천m <sup>3</sup> )	3,391	4,650
금 액 (천원)	2,540,820	3,980,392

### □ 변기 고장 누수 감면 현황('16~'18)

- 최근 3년간 변기 누수에 의한 감면 건수는 총 65,223건, 누수량은 5,384천톤, 감면금액은 17억8천6백만원으로 연평균 감면건수는 2만여건, 연평균 감면금액은 6억원 가량임.

- 누수감면제도가 1996년에 가정용에 최초 도입된 이래 2009년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 운영돼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년간 시행해 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음.

<표 5> 최근 3년간 변기고장으로 인한 누수 감면 건수, 누수량 및 감면 금액

구분	계	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누수 감면 건수	65,223건	21,741건	22,141건	20,108건	22,974건
누수량	5,384천톤	1,795천톤	1,755천톤	1,696천톤	1,933천톤
감면금액	1,786백만원	595백만원	591백만원	541백만원	654백만원

□ 업종별 변기 고장 누수 감면 금액

- 변기 고장에 따른 누수 감면 건수는 가정용 79%, 일반용 20%로 대부분을 차지함. 감면액 비율은 가정용이 56%, 일반용이 42%이고, 건당 평균 상수도 감면액은 가정용이 일반용의 30% 수준인 약 2만원임.

<표 6> 2018년 변기 고장에 따른 업종별 누수감면 건수 및 금액 현황

업종	건수	상수도 감면액	건당 평균 감면액	건당 평균 누수량
총계	22,974	653,678천원	28,471원/건	
가정용*	18,110(79%)	365,623천원(56%)	20,189원/건	73m <sup>3</sup>
일반용	4,691(20%)	276,224천원(42%)	58,884원/건	123m <sup>3</sup>
공공용	170	11,209천원	65,935원/건	180m <sup>3</sup>
욕탕용	3	622천원	207,300원/건	987m <sup>3</sup>

\*주택 유형별 누수발생 현황: 단독 주택 및 빌라 등에서 85% 발생, 특히 노후 주택에서 주로 발생

□ 중복 감면 세대(수전)수

- 최근 3년간 총 99,983세대가 1회 이상 감면받은 바 있음. 이 중 31,124세대(31.1%)가 2회 감면을 받았고, 15,142세대(15.2%)는 3회 이상 감면을 받는 등 46.3%가 중복 감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일부 시민들이 누수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과 감면 신청 절차 수행의 번거로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 여겨짐

<표 7> 최근 3년간 중복 감면 제공 세대(수전)수

감면횟수	전체	1회	2회	3회	4회이상
3년간 세대(수전)수 (’16~’18)	99,983	53,717	31,124	10,555	4,587
비율	100.0%	53.7%	31.1%	10.6%	4.6%

3) 변기 등의 누수 감면 대상 제외 관련(안 제26조제3항)

- 서울특별시는 현행 수도조례에 따라 옥내 누수 발생 시 위치와 관계 없이 누수량 전체를 경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 인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경감해 주고 있으나, 이를 통해 옥내 수도 설비의 관리 소홀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소중한 수자원의 낭비를 방관하고 있는 등 물 절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누수 감면제도는 수용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도 조례를 개정하여 '96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다만 옥내 수도 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고스란히 일반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수도요금 공평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5개 광역시들은 지하 및 벽체 누수 등에 의한 누수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변기 누수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물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와 수도요금 공평부담 원칙 및 타 광역시의 수도요금 감면 사례 등으로 미루어볼 때, 조례안 제26조제3항과 같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변기 누수에 의한 감면 건수는 연간 2만여 건이고, 누수감면 제도가 총 23년간 시행돼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의 즉각적인 시행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민원 증가로 인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앞서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